

沒收金品等處理에 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41
----------	------

발의연월일 : 2017. 9. 15.

발의자 : 박광온 · 최인호 · 이학영

권칠승 · 김종민 · 이찬열

백혜련 · 황희 · 정재호

김해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특히, 직역된 일본어나 고유 일본어를 한자로 표기한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엔 널리 쓰이는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일본식 한자어 ‘계기(揭記)된’을 ‘규정된’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안 제2조 제3호).

법률 제 호

沒收金品等處理에 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沒收金品等處理에 關한臨時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掲記된”을 “규정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